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
----------	----

제안년월일 : 2004. 4. 19.

제안자 : 이만재 의원의외 2인

1. 제안이유

-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가 94년 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비현실화를 위해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본 조례 제13조중 「별표 1」에 규정된 일비 5만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 나. 관계법령 : 「별첨 2」
- 다. 강원도 시·군 결산검사위원 일비인상 현황 : 「별첨 3」
- 라. 집행기관 의견 : 「별첨 4」
- 마. 예산조치 : 2004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별표 1】중 일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지 급 액
일 비	7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별표 1】		【별표 1】	
구 분	지 급 액	구 분	지 급 액
일 비	50,000원	일 비	7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 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여 비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강원도 시·군 결산검사위원 일비인상 현황

(2004. 3. 31기준)

시·군 별	인상 여부	비 고
춘천시	인상	
원주시	미인상	
강릉시	미인상	
동해시	미인상	
태백시	인상	
속초시	미인상(차기 임시회예정)	
삼척시	미인상	
홍천군	인상	
횡성군	인상	
영월군	인상	
정선군	미인상	
철원군	미인상	
화천군	미인상	
양구군	미인상	
인제군	미인상	
고성군	미인상	
양양군	미인상	